

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
- 상정일자: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총무과장 안상욱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('23. 4. 27.)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1) (현행)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
 - 2) (개정)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- 상위법령 근거,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명문화(안 제1조~제3조)
- 보조금의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, 정산 방법 명시(안 제4조~제6조)
- 지도·점검·교육에 관한 근거 및 지원 중단 사유 명시(안 제7조~제8조)
- 포상 및 지원 절차의 준용 조례 명시(안 제9조~제10조)
-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서식 신설(별지 제1호서식~별지 제5호서식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, 상위법령인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23년 4월 2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조례 제명을 『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』에서 『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하고,
 - 안 제4조 방범대등의 지원사항에 복장·차량·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비, 방범 초소·사무실 등 시설설치비, 홍보비, 상해보험 가입비, 야식비 등의 예산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.
 -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됨.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